

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박우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3. 8. 25.

발의의원 : 박우근, 권기훈
김대현, 박소영
박종필, 박창석
손한국, 이영애
이재숙, 이태손
임인환, 전경원
하병문, 허시영
황순자 의원
(15명)

1. 제안 이유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23.4.27.)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연합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현행 조례 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(內)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경비의 지원(안 제5조)
- 다. 지도 및 감독(안 제6조)
- 라. 포상(안 제7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연합대”란 구·군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.
3. “연합회”란 각 구·군의 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찰청장(이하 “대구경찰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설립

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자율방범활동을 권장하고,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·연합회(이하 “자율방범대 등”이라 한다)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합회 활동)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1. 구·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
2. 합동 순찰·계도 활동
3.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
4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대구경찰청장 및 각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과 정기·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

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등과 모범대원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구경찰청장, 경찰서장, 구·군,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제9조(다른 조례의 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.

관계 법령

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신고)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, 활동구역,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시·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① 시·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포상)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, 연합회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,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, 연합회 및 연합대(이하 “중앙회등”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중앙회등의 지도·감독)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, 시·도경찰청장은 연합회,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·감독한다.

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

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그 밖에 시·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6조(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한다.

1.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
 2. 법 제8조에 따른 복장·장비 등에 관한 사항
 3.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 4.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·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
- ② 시·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

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.

제23조(중앙회등의 지도·감독)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등을 지도·감독한다.

1.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
 2. 법 제8조의 복장·장비 등에 관한 사항
 3.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
 4.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
- ② 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운영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·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경찰청장등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.